

부속서 18A

협력

제 1 절

무역투자진흥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E Singapore”) 간의 협력은 제18.6조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간의 약정에 따라 수행된다. 그러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간의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정보통신기술·전자·자동차·식품 및 물류산업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상호 합의한 고성장분야에 중점을 둔 산업별 구체적 사업 및 활동의 공동 조직
- 나.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관계 구축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위하여 양 당사국의 온라인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데이터베이스를 전자적으로 연계
- 다. 싱가포르 내 대한민국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한 싱가포르 기업과 대한민국 기업 간 협력 증진, 대한민국기업의 싱가포르 지역 내 새로운 시장 개척 지원 및 싱가포르 기업의 충분한 수요와 관심이 있는 경우,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에 비즈니스 센터 설치, 그리고
- 다. 특히, 일방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분야와 관련된 무역박람회의 경우 타방 당사국이 주관하는 무역박람회에 각 당사국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모든 상당한 노력

2.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간의 그러한 협력을 촉진한다.

3.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수출신용보험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한국수출보험공사(“KEIC”)와 싱가포르 수출신용보험(“ECICS”) 간 협력을 촉진한다.

제 2 절

방송협력

1. 대한민국 방송위원회(“KBC”)와 싱가포르 미디어 개발청(“MDA”) (“양측”) 간 협력은 제18.8조 및 대한민국 방송위원회와 싱가포르 미디어 개발청 간의 약정에 따라 수행된다.

2. 협력이 양측의 권한범위 내에 속한다는 조건 하에서, 양측은 다음 영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협력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한다.

가. 디지털 방송 및 내용규제 등과 같은 방송정책문제에 관한 의견 및 정보 교환

나. 민간분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 마련에 관한 의견 및 정보 교환, 디지털방송컨텐츠의 상호 경험 습득,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과 같은 방송컨텐츠 발전에 관한 협력

다. 양 당사국의 방송분야를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방송사간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관련 교류 촉진

라. 방송사 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 촉진

마.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디지털 미디어의 공동제작 그리고 최첨단 방송 기술의 연구개발과 같은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활성화

바. 국제적으로 양 당사국의 방송컨텐츠의 마케팅 지원 및 대한민국의 Broadcast World Wide 또는 싱가포르의 아시아미디어페스티벌과 같은 기회를 통하여 양 당사국의 방송프로그램 전시를 촉진

사. 방송 관련 행사 참여를 포함한 방문의 협의, 그리고

아. 싱가포르 내에서의 대한민국 텔레비전 채널의 재송신 및 반대 경우의 장려

3. 양 당사국 간의 방송 협력은 그러한 협력의 범위가 양측의 권한범위 내인 조건에서, 다음 형태로 이루어진다.

가. 구축된 의사소통 경로를 통한 의견 및 정보의 교환

나. 방송과 관련한 방문

다. 산업체 간 제휴의 장려, 그리고

라. 그 밖에 양 당사국 간 서면으로 합의된 협력 형태

제 3 절

정부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1. 제18.10조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교류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2. 프로그램은 다음에 따라 수행된다.

- 가. 일방 당사국의 정부기관(“파견 보내는 기관”)은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국 공무원(“공무원”)을 선발하고, 외교 채널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의 대응기관에(“파견 받는 기관”)에 자국 공무원 파견 의사를 통보한다.
- 나. 파견 받는 기관은 외교 채널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공무원의 참가에 관한 입장을 표시한다. 파견 보내는 기관과 파견 받는 기관은 공무원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지 여부를 상호동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다. 파견 보내는 기관과 파견 받는 기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고려하면서 개시일 및 기간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공무원의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외교 채널을 통하여 협의한다.
- 라.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공무원은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3. 파견 보내는 당사국은 공무원에게 다음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가. 파견 받는 당사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그곳에서의 활동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 받는 기관의 관련지시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할 것
- 나. 프로그램 참가 중에는 일방 당사국을 위한 첨보에 관련된 활동에도 종사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다. 파견 받는 기관이 공무원에게 기밀로 한다고 통보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할 것

4. 파견 보내는 기관은 파견 받는 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기 전에 공무원이 제3항가호·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는 것을 기재한 서명문서를 외교 채널을 통하여 파견 받는 기관에 제출한다. 위 조건의 미준수는 프로그램 공무원의 참가 종료 사유가 될 수 있다.

5. 파견 받는 정부는 여비 및 체재비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그 밖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파견 받는 기관은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공무원이 관여하던 동일 주

제 사안과 합치하는 적절한 배치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공무원을 파견 받는 기관의 동료와 함께 하는 사무환경 하에 두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언어능력, 관심, 전문분야, 배경이 되는 지식, 파견 받는 기관의 일정 정보에 대한 비밀보전의 요건을 고려한다.

7. 파견 받는 정부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비자 또는 근로허가를 공무원에게 발급하여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8. 양 당사국은 프로그램 및 이 부속서의 이행을 필요시 적절하게 평가한다.

9.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으로부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타방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4 절 영화제작 협력

한국영화진흥위원회(“KOEIC”)와 미디어개발청(“MDA”) 간의 협력은 제 18.13조와 양 기관 간 체결예정인 약정에 따라 수행된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와 미디어개발청 간의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각 당사국의 영화산업 제작자의 영화공동제작 장려 및 촉진
- 나. 각 당사국 영역 내에서 공동제작된 영화의 배급 지원
- 다. 타방 당사국 영역 내에서 각 당사국의 미디어분야 학생, 교사 및 전문가에 대한 훈련 및 부수적 기회의 장려 및 촉진
- 라. 타방 당사국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기간 중 일방 당사국의 영화상영 기회와 동 행사기간 중 문화교류 기회의 장려 및 촉진